

## 가. 추진배경

-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

## 나. 사업명 및 주관기관

- 사업명 :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
- 사업주관기관 : 지자체(시·도/ 시·군)
  -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,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
- 사업담당 : 농림축산식품부(농촌복지여성과)

## 다. 근거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- 영유아보육법 제52조(도서·벽지·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)
-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(농촌 여성의 복지증진)
-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(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)

## 라. 정의

-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(위탁운영 포함)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

## 마. 규모 및 명칭

-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명칭은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하여야 함
-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△△분원”으로 하여야 함

- ◇ 분원시설 :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
- ◇ 본원시설 : 본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국공립어린이집

#### 바. 지원보조

- 시설비 : 국비 70%, 지방비 30% 지원
- 운영비 : 국비 100% 지원

#### 사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어린이집이 없는 읍·면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대한“농촌 소규모 어린이집”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·군
  - 시장·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,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

#### 아. 설치절차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,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
-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  - \*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(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)로 전환시 폐원절차 없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사업 승인시 전환 가능

#### 자. 배치기준

-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·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
  - 단,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

### 차. 시설의 위탁운영 등

- 법적근거
  -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·제4항, 동법시행규칙 제24조·제25조
- 운영방법
  - 보육교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접 운영하거나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
  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,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
  - 비영리법인·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
  -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을 준용함

### 카. 설치 및 지원기준

#### 1)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
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함

#### 2)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
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호 규정<개정 2013.12.5>에 의함

#### 3)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

- 매 분기말 익월 1주 이내에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
#### 4) 설치비 지원

- 개소당 지원 단가 : 152백만원(지방비 포함, 국고보조율 70%)

##### ① 3~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

- 리모델링·신축비 : 64.35㎡이내(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), 81,725천원(지원단가 1,270,000원/㎡ 적용)
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33㎡, 20,000천원(지원단가 606,060원/㎡ 적용)
- 기자재·장비구입 : 29,000천원

- 차량구입 : 22,000천원/1대(15인승 이하 봉고)

※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② 16~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

- 리모델링·신축비 : 85.8㎡이내(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), 108,966천원(지원단가 1,270,000원/㎡ 적용)

- 기자재·장비구입 : 22,000천원

- 차량구입 : 22,000천원/1대(15인승 이하 봉고)

※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5) 운영비 지원

○ 개소당 최대 13,700천원 지원

-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(1인기준) : 10만원/월

※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, 보육교사, 취사부, 원장 순으로 지원

- 보육교사 교통비(1인기준) : 10만원/월

※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, 보육교사에게만 지원(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)

- 교재·교구비(1개소) :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, 500천원~1,000천원/1회

※ 신청월 상시 영유아 수가 3~5명일때는 500천원, 6~10명일때는 700천원, 11~15명일때는 1,000천원을 지원

- 프로그램개발비(1개소) : 연 2,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

- 냉·난방비(1개소) : 연 1,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(200천원/월 이내 원칙)

※ 단,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1,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

타. 어린이집 운영

1)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

(1) 어린이집 운영규정

○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·인사·급여·회계·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함

(2) 보육대상

○ 만 0세~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

(3)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서·벽지 지역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(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), 학부모의 반편성 요구(형제 등 동반입소)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 전체(0~2세)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. 단,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

\* 도서·벽지 지역 :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서·벽지 지역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로서,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

\* 도서·벽지 지역 :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

- 기타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II.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용

\*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,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'16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음

#### (4) 입소순위

-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함

#### (5) 기타 보육운영시간,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등 운영 기준
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 및 201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함

#### (6) 보육교직원

- 어린이집 원장

-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보육정원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,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)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분원의 경우, 분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짐

- 보육교사

-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[별표1]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,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 운영을 지원하는 '분원운영지원교사'로 지정할 수 있음
-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함

-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사업대상자는 10인 이하인 경우에도 직접 운영 또는 분원 운영 모두 가능

◇ 본원 원장(국공립어린이집)의 책임

-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
-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
-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
- 예·결산 회계

◇ 분원 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

-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.
  -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  -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분원 운영지원교사는 본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  - 일과운영 계획
  - 보육실 환경 구성
  - 조리실 관리
  - 교재교구 선정
  - 부모상담
  - 급간식 식단 운영
  -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

(7)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

-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1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.

## 가. 목적

-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

※ 농림축산식품부에서 '16년부터 이관

## 나. 지원내용

- 농촌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개인별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

## 다. 지원대상

-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
  -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(실 근무일수)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(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)
    - ※ 다만,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 제외), 주 5일 이내 휴가,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, 단,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
  -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(CIS)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
    - ※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
    - ※ 시간 연장형 교사, 방과후 교사, 24시간 교사,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  - ※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(실 근무일수) 이상 근무시 지급
- 육이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월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
- 지원 제외 :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, 보육교사 보조

## 라. 지급 방식

-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·군·구에서 매월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

- 원장은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
- 시·군·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,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
-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(신청월 포함 3개월)
-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(집행)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# 마. 지원 형태

○ 지원기준 :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

- 국고 40~60%, 지방비 40~60%

※ 농어촌 등의 범위(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-2537호, 2015. 7. 3)

1. 「도서·벽지교육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
2.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의 농어촌
  - 가. 읍·면의 지역
  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, 농어업 관련 산업,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

<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>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
  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)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
    - 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 녹지지역
    - 나.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
    - 다.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  3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.8.14.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나목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(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
3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3조 및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의한 준농어촌  
 \*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

## 가. 지원내용

-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 냉·난방비, 급간식비, 교재교구비, 공과금, 차량운행비,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

## 나. 지원대상

- 농어촌지역\*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
\*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(2016 보육사업안내 p.310 참고)

## 다. 지원기준

- 어린이집 규모(정원) 및 정원충족률\*에 따라 차등 지원

※ 정원충족률은 '매월 말일 기준'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

## - 지원단가

(단위 : 천원/월)

정원 구분	60인 이하	61~80인 이하	81~100인 이하	101~120인 이하	121인 이상
60%이하	240	250	260	270	280
61~80%	220	230	240	250	260
81~100%	200	210	220	230	240

## 라. 지원절차

-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

- 시·군·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,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
-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(신청월 포함 3개월)
-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(집행)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

마. 지원 형태

○ 지원기준 :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

- 국고 40~60%, 지방비 40~60%

※ 농어촌 등의 범위(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-2537호, 2015. 7. 3)

1. 「도서·벽지교육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
2.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의 농어촌
  - 가. 읍·면의 지역
  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, 농어업 관련 산업,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

<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>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
  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)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
    - 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 녹지지역
    - 나.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
    - 다.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  3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.8.14.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나목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(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
3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3조 및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의한 준농어촌
- \*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